

[제 1392 호]

2017년 7월 21일(금)

고양시보



차 례

입법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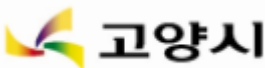
고양시 공고 제 2017-1262호	고양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고양시 공고 제 2017-1266호	고양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7
고양시 공고 제 2017-1271호	고양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

고 시

고양시 고시 제 2017-235호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 도내 대중골프장 9홀)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25
고양시 고시 제 2017-237호	도로명주소 고시	28

공 고

고양시 공고 제 2017-1270호	고양시 급고지정 계획 재공고	32
고양시 공고 제 2017-1273호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소로3-473호선 일부개설] 실시계획인가 전 열람 공고	38
고양시 공고 제 2017-1275호	2025 고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 주민 공람 공고	41
고양시 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 2017-170호	운행정지명령 자동차 공고	45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21일

고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숙직 및 일직근무 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대체휴무 적용 근거를 신설하여 당직 직원간의 형평성 제고와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가. 숙직 및 일직근무 종료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당직근무자 휴무 규정을 신설함.(안 제4조)
《당직근무자 휴무 규정 신설》
 - 숙직근무의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5일 이내에 1일을 선택하여 휴무
 - 일직근무자에 대하여는 숙직근무자 휴무에 준하여 휴무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7년 8월 1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연락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행정지원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 전 화 : 행정지원과 행정지원팀(031-8075-2175)
- 팩 스 : 031-8075-4906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고양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의견	비고

고양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고양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고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7조”를 “「고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당직근무자의 휴무) ① 숙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숙직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에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숙직근무의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5일 이내에 1일을 선택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② 일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단서의 숙직근무자 휴무에 준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③ 정상근무일에 휴무하는 경우에는 업무대행자를 지정하고, 대행자에게 업무 인계·인수 후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휴무하여야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시장”을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소관과		행정지원과
입안자	과장 성명	행정지원과장 김운영
	팀장 성명	행정지원팀장 신재홍
	담당자 성명·전화	김관우 (031-8075-2175)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7조에 따라 고양시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4조(숙직근무자의 휴무) <u>숙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근무종료 시각이 속하는 날을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u></p> <p>제5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생략) ② 본청·구청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역 내의 상황에 따라 당직근무자의 직급조정 및 인원을 증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직업무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 본청은 <u>시장의 승인을 받고</u>, 구청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 3. (생략) ③ ~ ④ (생략)</p>	<p>제1조(목적) 「고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p> <p>제4조(당직근무자의 휴무) ① <u>숙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숙직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에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숙직근무의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5일 이내에 1일을 선택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u> ② <u>일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단서의 숙직근무자 휴무에 준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u> ③ <u>정상근무일에 휴무하는 경우에는 업무대행자를 지정하고, 대행자에게 업무인계·인수 후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휴무하여야 한다.</u></p> <p>제5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현행과 같음) ② <u>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u> 1. ~ 3. (현행과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p>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 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21일

고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제정이유
 - 고양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 민간위탁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여성근로자의 권익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가. 여성근로자복지센터의 사업을 정함.(안 제4조)
 - 나. 여성근로자복지센터의 운영 및 위탁관리에 대하여 정함.(안 제5조)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7년 8월 1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연락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청 (여성가족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주교동)
- 전 화 : 여성가족과 여성인력개발팀 (031-8075-3341)
- 팩 스 : 031-8075-4916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고양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고양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근로자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과 일·가정 양립지원 등을 위하여 고양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여성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구직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

제3조(설치)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양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고양시 관내에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여성근로자의 모성권리를 위한 상담, 교육 및 홍보 등 지원
2. 여성근로자 고용유지를 위한 일·가정 양립 지원
3. 여성근로자의 양성평등 지원
4. 여성근로자 자조모임(커뮤니티) 및 가족친화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운영 및 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센터의 운영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수탁자 선정절차, 방법, 위탁기간 등 그 밖에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③ 시장은 센터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제4조에 따른 사업

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위탁계약의 해제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법령이나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는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위탁받은 사업과 보조금 일체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7조(보고 및 조사)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장으로 하여금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위탁한 것으로 본다.

소관과		여성가족과
입안자	과장 성명	여성가족과장 이영심
	팀장 성명	여성인력개발팀장 홍호조
	담당자 성명·전화	정은진 (031-8075-3341)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제정이유

가. 자치법규안 및 관련조문

- 고양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 제3조, 제5조

나. 비용 발생 요인

-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4항 따라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음.

2.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구 분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사업기간		2014. 1. ~12.	2015. 1. ~12.	2016. 1. ~12.
사업수행(수탁)기관		고양YWCA	고양YWCA	고양YWCA
사업비	합 계	113,000천원	136,326천원	130,000천원
	도비매칭사업비(도비)	12,000천원	26,000천원	39,000천원
	도비매칭사업비(시비)	101,000천원	110,326천원	91,000천원
사업실적 (참여인원)	합 계	830	1,026	845
	상담사업(권익, 고충)	113	155	476
	고용유지 및 권익증진 교육	549	554	154
	고용복지(일·가정양립지원)	168	317	215

나. 추계결과

(단위: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 계
총 소요액		130	130	130	130	130	650
고양여성근로자 복지센터 운영 지원	도 비	39	39	39	39	39	195
	시 비	91	91	91	91	91	455

다. 재원조달방안: 2017년 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해당사항 없음

4. 작성자: 여성가족국 여성가족과장 이영심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	계
세 입		39,000	39,000	39,000	39,000	39,000	195,000
고양여성근로자복지센터 운영 지원 사업(도비)		39,000	39,000	39,000	39,000	39,000	195,000
세 출		130,000	130,000	130,000	130,000	130,000	650,000
고양여성근로자복지센터 운영 지원 사업		130,000	130,000	130,000	130,000	130,000	650,000
재원 조달		130,000	130,000	130,000	130,000	130,000	650,000
의존 재원	소 계	39,000	39,000	39,000	39,000	39,000	195,000
	보조금	39,000	39,000	39,000	39,000	39,000	195,000
	지방교부세	0	0	0	0	0	0
자체 수입	소 계	91,000	91,000	91,000	91,000	91,000	455,000
	지방세	91,000	91,000	91,000	91,000	91,000	455,000
	세외수입	0	0	0	0	0	0
지방채		0	0	0	0	0	0
기 금		0	0	0	0	0	0
공기업 특별회계		0	0	0	0	0	0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0	0	0	0	0	0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21일

고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급수구역별 및 건축물 용도별로 차등 부과하고 있는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고양시 내 동일한 기준으로 정비하여 공정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가.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항을 정비함.(안 제11조 제4항)
 - 나. 급수구역별 및 건축물 용도별로 차등 부과하고 있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고양시 모든 지역에서 구경별 정액제로 동일하게 정비함.(안 별표 1)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7년 8월 1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연락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수도시설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1(고양시티타워 6층)
- 전 화 : 수도시설과 수도계획팀 (031-8075-4492)
- 팩 스 : 031-925-1678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고양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고양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 및 제72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5조”를 “「수도법」 제71조 및 제7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원인자부담금은 부과대상 시설물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11조제4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118조의 규정”을 “「지방세기본법」 제90조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신청된 급수공사 등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산정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관과		수도시설과
입안자	과장 성명	수도시설과장 김영덕
	팀장 성명	수도계획팀장 유성민
	담당자 성명·전화	김태영 (031-8075-4492)

[별표 1]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제6조제1항 관련)

1. 제5조제1항제1호의 경우(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text{원인자부담금} = \text{단위사업비(총 사업비/시설용량)} \times \text{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

가. 단위사업비란 수도시설 총공사비를 시설용량으로 나누어 산정한 수돗물 1m³당 사업비를 말한다.

- 1) 단위사업비는 최근 건설 완료된 수도시설사업(원수시설, 정수시설, 송수시설, 배수시설)에 대한 수돗물 1m³당 사업비를 말한다.
- 2) 신·증설되는 배수시설에 대한 단위사업비는 실소요공사비를 적용한다.

나.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은 해당 사업의 사업계획서 또는 설계서를 기초로 산정한 인원에 준공 예정 연도의 1인당 1일 최대 급수량(l pcd)을 곱하여 산정한 양으로 한다.

- 1)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 = 수용인구 × 1인1일 최대 급수량(l pcd)
- 2) 1인1일 최대급수량 = 1인1일 평균 급수량 × 첨두계수
- 3) 1인1일 평균 급수량 = 고양시 수도정비기본계획의 1인1일 평균 수요량

* 사용인구는 준공 예정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사용량은 주거시설의 경우 가정용사용량을 비주거시설은 해당 시설의 업종별 사용량을 기준으로 한다.

다. 위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원인자부담금은 통계청이 매년 12월에 공표하는 전년도 연간생산자 물가상승률을 곱하여 해당 연도 원인자부담금으로 한다.

2. 제5조제1항제2호의 경우(급수구역 밖 건축물 등)

$$\text{원인자부담금} = [(\text{순자산/시설용량} \times \text{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 + \text{추가사업비}]$$

가. 순자산 = (가동설비자산 + 건설중인 자산 - 기부금 누계액) - 시설분담금 및 공사부담금 누계 × (1 - 감가상각 누계액 / 가동설비자산 취득가액)

* 순자산은 급수구역 내의 자산에 한정하며, 감가상각 누계액과 가동설비자산 취득가액은 합계액으로 한다.

- 1) 가동설비자산은 해당 연도 대차대조표상 토지, 임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기구비품, 기타가동설비자산 등 가액에서 감가상각 누계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 2) 기타가동설비자산은 급수장치 등 기부채납자산을 말한다.
- 나. 추가사업비란 급수구역 밖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거 등 송·배수시설의 실소요공사비용을 말한다.
- 다.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은 제5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 적용된 산식을 적용한다.

3. 제5조제1항제3호의 경우(급수구역 내 건축물 등)

원인자부담금 = 수도계량기 구경별 정액제

가. 수도계량기 구경별 원인자부담금

(단위 : 천원)

구 분	13m/m	20m/m	25m/m	32m/m	40m/m	50m/m	75m/m	100m/m	150m/m	200m/m	250m/m
원인자부담금	280	420	776	1,164	1,552	3,628	6,480	12,052	24,104	40,500	64,782
급·배수공사비	실제 소요 공사비										

-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기업(민간이 설치하여 기부채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등이 설치하고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 순수한 공공 목적의 건축물(학교, 도서관, 공원, 공공청사 등)에 대하여는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 다. 급수장치 개조 등으로 부담금이 추가 발생할 때에는 기 부과된 부담금을 제외한 원인자부담금 차액을 징수한다.
- 라. 부과시기 : 급수공시 신청시

현행	개정안
<p>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건축물의 증·개축 등으로 시설용량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증가된 용량에 한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p>	<p>.....</p>
<p>② (생략)</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1조(이의신청) ① ~ ③ (생략)</p>	<p>제11조(이의신청)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이의 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118조 규정을 준용한다.</p>	<p>④..... 「지방세기본법」 제90조를</p>

현	개 정 안
<p>[별표 1]</p> <p>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제6조제1항 관련)</p> <p>○ 제5조제1항제1호의 경우(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p> <p>1. ~ 3. (생략)</p> <p>4.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자가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을 직접 시공시 수도구역내 건축물 등의 적용대상이나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한다.</p> <p>○ 제5조제1항제2호의 경우(급수구역 밖 건축물 등)</p> <p>1. 순자산 = (가동설비자산 + 건설중인 자산) - (기타 가동설비자산 + 시설분담금 및 공사부담금 누계 + 고정부채)</p> <p>* 순자산은 급수구역내의 자산에 한정한다.</p> <p>가. ~ 나. (생략)</p> <p>2. ~ 3. (생략)</p> <p>○ 제5조제1항제3호의 경우(급수구역 내 건축물 등)</p> <p>원인자부담금 = 수도계량기 구경별 또는 세대당 정액제</p> <p>1. 원인자부담금 산정</p> <p>가. 수도시설의 신설·증설 비용에 대하여는 1997년 12월말까지 주거, 상업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건축되는 건축물에 대하여 시장이 정한 시설 이상에 고양시 상수도 시설비용에 투자되었거나 투자가 확정된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대상시설에 부과한다.</p>	<p>[별표 1]</p> <p>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제6조제1항 관련)</p> <p>1. 제5조제1항제1호의 경우(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p> <p>가. ~ 다. (현행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같음)</p> <p><삭제></p> <p>2. 제5조제1항제2호의 경우(급수구역 밖 건축물 등)</p> <p>가. 순자산 = (가동설비자산 + 건설중인 자산 - 기부금 누계액) - 시설분담금 및 공사부담금 누계 × (1 - 감가상각 누계액 / 가동설비자산 취득가액)</p> <p>* 순자산은 급수구역내의 자산에 한정하며, 감가상각 누계액과 가동설비 자산 취득가액은 합계액으로 한다.</p> <p>1) ~ 2) (현행 가목 및 나목과 같음)</p> <p>나. ~ 다. (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p> <p>3. 제5조제1항제3호의 경우(급수구역 내 건축물 등)</p> <p>원인자부담금 = 수도계량기 구경별 정액제</p>

현 행 개 정 안

－ 급수구역내 구분 현황

고봉급수1구역 및 터이지구 풍동,식사동,일산2동일부,성석동, 문봉동,사리현동,지영동,내유동, 설문동,터이지구	벽체급수구역 벽체동	기타지역 고봉급수1구역, 벽체, 대화동,가좌동 급수구역 이외지역
---	---------------	--

－ 원인자부담금 산정내역

- 주거시설 (공동주택 및 다세대주택) - 급수구역별 세대당 (단위 : 원)

구 분	고봉급수1구역 및 터이지구	벽체급수구역	대화동지역	가좌동지역	기타지역
원인자 부담금	718,460	792,800	670,910	904,930	280,000
급·배수 공사비	실제 소요 공사비				

나. 가항 외 그 밖의 건축물 등

- 단독주택 및 기타 - 수도계량기 구경별 (단위 : 천원)

구 분	13m/ m	20m/ m	25m/ m	32m/ m	40m/ m	50m/ m	75m/ m	100m/ m	150m/ m	200m/ m	250m/ m
원인자 부담금	280	420	776	1,164	1,552	3,628	6,480	12,052	24,104	40,500	64,782
급·배수 공사비	실제 소요 공사비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 순수한 공공 목적의 건축물은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3. 급수장치의 개조시 기 부과된 부담금을 제외한 원인자부담금 차액을 징수한다.
4. 부과시기 : 급수공사 신청시

가. 수도계량기 구경별 원인자부담금 (단위 : 천원)

구 분	13m/ m	20m/ m	25m/ m	32m/ m	40m/ m	50m/ m	75m/ m	100m/ m	150m/ m	200m/ m	250m/ m
원인자 부담금	280	420	776	1,164	1,552	3,628	6,480	12,052	24,104	40,500	64,782
급·배수 공사비	실제 소요 공사비										

-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기업(민간이 설치하여 기부채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등이 설치하고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 순수한 공공 목적의 건축물(학교, 도서관, 공원, 공공청사 등)에 대하여는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 다. 급수장치 개조 등으로 부담금이 추가로 발생할 때에는 기 부과된 부담금을 제외한 원인자부담금 차액을 징수한다.
- 라. 부과시기 : 급수공사 신청시

고양시 고시 제2017 - 235호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 도내 대중골프장 9홀)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1.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1129, 1130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도내 대중골프장 9홀)에 대하여 고양컨트리클럽(주)으로부터 골프연습장 및 주차장 추가 설치를 위한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서가 작성·제출되어,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의거 실시계획(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합니다.

2017년 7월 21일

고 양 시 장

1) 실시계획(변경)인가 내용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1129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골프장)사업
- 명칭 : 고양컨트리클럽(체육시설:골프장)

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구분	도시계획시설명	면적(m ²)	위치	비고
결정	체육시설 (대중골프장 9홀)	295,597.9	덕양구 도내동 948, 949번지	
금회	체육시설 (대중골프장 9홀)	295,597.9	덕양구 도내동 1129, 1130번지	

- 변경내용 : 골프연습장 및 주차장 추가 설치(“별첨” 세부내역 참조)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고양컨트리클럽(주) 대표 김기자
- 고양시 덕양구 흥도로 304-23(도내동)

마.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예정일(변경)

- 실시계획 인가일 ~ 2018.12.31.

바. 관계도면 : “계재생략”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별첨” 조서와 같음)

2) 관계도면 : “계재생략”

○ 토지이용계획

구분	기 정			변 경			비고	
	시설내역	면적(㎡)	구성비(%)	시설내역	면적(㎡)	구성비(%)		
계		295,597.9	100.00		295,597.9	100.00		
체육시설 용지	소 계		66,170.6	22.39		63,778.0	21.58	▼2,392.6
	그 린	18개소	9,952.6	3.37	18개소	9,952.6	3.37	
	티	19개소	4,199.3	1.42	19개소	2,547.7	0.86	▼1,651.6
	빙 커	24개소	1,143.3	0.39	24개소	1,143.3	0.39	
	페 어 웨 이		31,641.3	10.70		31,152.9	10.54	▼488.4
	러 프		18,729.7	6.34		18,477.1	6.25	▼252.6
	연 습 그 린	2개소	504.4	0.17	2개소	504.4	0.17	
건축시설 용지	소 계	3,443.60	5,480.0	1.85	3,790.52	5,480.0	1.85	
	클럽하우스 (클럽연습장 포함)	3,387.57	5,380.0	1.82	3,734.49	5,380.0	1.82	
	티 하우스	56.03	100.0	0.03	56.03	100	0.03	
기반시설 용지	소 계		36,605.8	12.38		38,838.8	13.14	▲2,233.0
	진 입 도 로	L=426.7m B=8~13m	4,252.9	1.44	L=426.7m B=8~13m	4,252.9	1.44	
	카 트 로	L=3,489.7m B=2.7	10,885.3	3.68	L=3,489.7m B=2.7	10,885.3	3.68	
	주 차 장	221대	7,127.0	2.41	301대	9,360.0	3.17	▲2,233.0
	저 류 지	4개소	14,340.6	4.85	4개소	14,340.6	4.85	
	물 탱 크	-	-	-	-	-	-	
	오 수 처 리 장	-	-	-	-	-	-	
	조 명 시 설	54개소	-	-	54개소	-	-	
녹지용지	소 계		187,341.5	63.38		187,501.1	63.43	▲159.6
	원 형 보 존		97,457.0	32.97		97,457.0	32.97	
	조 성 녹 지 (복원녹지포함)		89,884.5	30.41		90,044.1	30.46	▲159.6

○ 건축계획

구 분	계	지하1층	지상1층	지상2층	지상3층	비 고
합계	기정	3,443.60	601.38	1,908.21	934.01	0
	변경	3,790.52	601.38	1,908.21	1,009.71	271.22
	증감	중) 346.92	-	-	중) 75.70	중) 271.22
클럽 하우스 (연습장 포함)	기정	3,387.57	601.38	1,852.18	934.01 (옥탑:135.59)	-
	변경	3,734.49	601.38	1,852.18	1,009.71	271.22
	증감	중) 346.92	-	-	중) 75.70	중) 271.22
티하우스	기정	56.03	-	56.03	-	
	변경	56.03		56.03		
	증감	-		-		
건축면적	2,072.35					변경없음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관계	
1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1129	체	198,140.9	198,140.9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광도로 304-23 (도내동)	고양컨트리클 럽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1가 203 (일산충당지점)	주식회사 우리은행	근저 당권	
2		1130	임	97,457.0	97,457.0						
합 계				295,597.9	295,597.9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24조제1항, 제25조에 의거 건물 등에 도로명주소 부여·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7월 21일

고 양 시 장

- 도로명주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동산1로 20 외 41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일	
별 지 참 조				
종전주소	변경전 도로명주소	변경후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변경일	변경사유
별 지 참 조				
폐지 도로명주소	폐지일자		폐지사유	
별 지 참 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청 토지정보과(☎8075-3096~8)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7. 7. 21.일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에 따라 새로이 도로명주소를 부여하였습니다.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고양시 도로명주소 신규고시 조서

연 번	종 전 주 소	도 로 명 주 소	도 로 명 주 소 고시일	도 로 명 고 시 일	부 여 사 유	비 고
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동산동 350-9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동산1로 20 (동산동)	20170721	20120601	법정동 명칭을 도로명에 적용	
2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336-2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1432번길 171 (성사동)	20170721	20100126	고양대로 시점에서 14320m에 위치한 도로	
3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336-2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1432번길 173 (성사동)	20170721	20100126	고양대로 시점에서 14320m에 위치한 도로	
4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336-2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1432번길 175 (성사동)	20170721	20100126	고양대로 시점에서 14320m에 위치한 도로	
5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336-2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1432번길 177 (성사동)	20170721	20100126	고양대로 시점에서 14320m에 위치한 도로	
6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동산동 53-17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2002번길 47-30 (동산동, A)	20170721	20100126	고양대로 시점에서 20020m에 위치한 도로	A
7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동산동 53-171, 53-176, 53-18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2002번길 47-32 (동산동, B)	20170721	20100126	고양대로 시점에서 20020m에 위치한 도로	B
8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동산동 53-17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2002번길 47-37 (동산동, C)	20170721	20100126	고양대로 시점에서 20020m에 위치한 도로	C
9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장동 56-1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장길 66-30 (대장동)	20170721	20000727	법정동 명칭을 도로명에 적용	
1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장동 56-12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장길 66-32 (대장동)	20170721	20000727	법정동 명칭을 도로명에 적용	
1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 140-39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로136번길 48 (삼송동)	20170721	20100126	삼송로 시점에서 1360m에 위치한 도로	
12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 140-4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로136번길 48-1 (삼송동)	20170721	20100126	삼송로 시점에서 1360m에 위치한 도로	
13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 140-4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로136번길 48-2 (삼송동)	20170721	20100126	삼송로 시점에서 1360m에 위치한 도로	
14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7-28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46번길 78-9 (덕은동, 알콘no.1)	20170721	20100126	중앙로 시점에서 460m에 위치한 도로	알콘no.1
15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 524-2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966번길 107-6 (관산동)	20170721	20100126	통일로 시점에서 9660m에 위치한 도로	
16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주내동 438-5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주로999번길 46-75 (행주내동)	20170721	20100126	행주로 시점에서 990m에 위치한 도로	
17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610-6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777번길 12 (주교동, 스카이팰리스)	20170721	20100126	호국로 시점에서 7770m에 위치한 도로	스카이팰리스
18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192-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랑로286번길 42-65 (용두동)	20170721	20100126	화랑로 시점에서 2860m에 위치한 도로	
19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290-10, 290-11, 29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흥도로178번길 135 (도내동, 코비빌딩)	20170721	20100126	흥도로 시점에서 1780m에 위치한 도로	코비빌딩
2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신원동 651-7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신원로2길 52 (신원동)	20170721	20120601	법정동 명칭을 도로명에 적용	

2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 987, 986-26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성현로 79 (성석동)	20170721	20090911	고양 팔현 성현의 의미를 도로명에 적용	
22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 171-18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동국로223번길 25 (성석동)	20170721	20100126	동국로 시점에서 2230m에 위치한 도로	
23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 171-5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동국로223번길 26 (성석동)	20170721	20100126	동국로 시점에서 2230m에 위치한 도로	
24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626-32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며칠길 218-71 (장항동)	20170721	20090911	고유 지명을 도로명에 적용	
25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문봉동 33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성현로377번길 49-6 (문봉동)	20170721	20100126	성현로 시점에서 3770m에 위치한 도로	
26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설문동 378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진천길166번길 48 (설문동)	20170721	20100126	장진천길 시점에서 1660m에 위치한 도로	
27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지영동 414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지영로147번길 79 (지영동)	20170721	20120314	지영로 시점에서 1470m에 위치한 도로	
28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 367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진발로45번길 97 (성석동)	20170721	20100126	진발로 시점에서 450m에 위치한 도로	
29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동 160-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802 (가좌동)	20170721	20090710	고양시 중앙을 통과하는 도로	
30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법곡동 752-29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로 53-34 (법곡동)	20170721	20090911	법정동 명칭을 도로명에 적용	
31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법곡동 1597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법곡길 200-40 (법곡동)	20170721	20090911	법정동 명칭을 도로명에 적용	

고양시 도로명주소 변경고시 조서

연번	종전 주소(지번주소)		도로명주소 (새주소)	관련지번 변경일	변경 사유	비고
	변경 전	변경 후				
1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법곡동 1110-2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법곡동 1110-5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송산로266번길 280	2017.07.21	분할	
2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동 461-21, 461-11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동 461-21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로50번길 46	2017.07.21	관련지번 변경	
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동 461-12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동 461-11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로 34-17	2017.07.21	관련지번 변경	
4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문봉동 168-27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문봉동 168-27, 165-58, 168-60, 168-61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문봉길 12-33	2017.07.21	관련지번 변경	

고양시 도로명주소 변경고시 조서

연번	지번 주소	변경전 도로명주소	변경후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변경일	변경 사유	비고
1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560-7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미레로 184-11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미레로 180	2017. 7. 21	주출입구 변경	

고양시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조서

연번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폐지일	폐지 사유	멸실건물 고시일자	법정동	비고
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성현로377번길 49-6	2017-07-21	신축으로 인한 건물 멸실	2011. 7. 29	문봉동	
2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목절길 218-71	2017-07-21	신축으로 인한 건물 멸실	2012. 4. 24	장항동	
3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진천길166번길 48	2017-07-21	신축으로 인한 건물 멸실	2011. 7. 29	실문동	
4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777번길 12	2017-07-21	신축으로 인한 건물 멸실	2011. 7. 29	주교동	
5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흥도로178번길 135	2017-07-21	신축으로 인한 건물 멸실	2011. 7. 29	도내동	
6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장길 66-30	2017-07-21	신축으로 인한 건물 멸실	2011. 7. 29	대장동	

고양시 금고지정 계획 재공고

고양시 금고 약정기간이 2017. 12.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고양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에 의거 고양시 금고 업무를 취급할 금융기관을 지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21일

고 양 시 장

1. 지정방법 : 일반경쟁
2. 약정기간 : 4년 (2018. 1. 1. ~ 2021. 12. 31.)
3.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
4. 금고의 수 : 단수금고(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특별회계는 제외함.
5. 시 금고 주요업무
 - 가. 각종 세입금의 수납 및 세출금의 지급
 - 나. 세입세출외 현금의 수납 및 지급
 - 다. 유가증권(수입증지 등)의 출납 및 보관
 - 라. 지역경제 및 지역사회에 기여
 - 마. 기타 금고업무 취급상 필요하다고 지정한 업무

6. 신청절차

가. 관련서류 열람

- 기 간 : 2017. 7. 24.(월) ~ 2017. 7. 25.(화), 09:00~18:00
- 장 소 : 고양시청 세정과(신관 지하1층) ☎031-8075-2255~6
- 열람서류 : 세입·세출결산자료 및 부속서류(2014 ~ 2016)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서, 「고양시 금고지정 신청 안내서」 등

나. 제안신청서 접수

- 기 간 : 2017. 7. 31.(월), 09:00~18:00
- 장 소 : 고양시청 세정과(신관 지하1층)
- 제출부수 : 12부(원본 1, 사본 11), 요약서 12부 별도
- 제출내용 : 「고양시 금고지정 신청 안내서」에 의한 지정서류
↳ 관련서류 열람기간 별도 배포
- 제출방법 : 방문제출

7.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별첨

8. 평가(심사) 및 지정방법

가. 「고양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고양시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평가함.

나. 고양시 금고를 운영·관리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제출된 제안서를 근거로 종합적으로 서류 심사함.

다. 금융기관별 평가결과 최고득점을 받은 금융기관을 우선 지정 하되 우선 지정대상으로 선정된 금융기관이 약정을 포기하거나 기타 사유로 약정을 체결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차순위 은행을 우선 지정대상으로 선정함.

라. 고양시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대면심사도 병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서는 대표성이 있는 자가 이에 응하여야 하며, 불응함에 따라 발생하는 불이익은 금융기관의 책임으로 함.

9. 약정체결 및 손해 배상

- 가. 우선 지정대상으로 선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약정을 체결하여야 하며,
- 나. 약정을 포기하거나 기타 사유로 약정을 체결하지 못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고, 향후 금고 지정 신청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10. 기타사항

- 가. 제안서는 「고양시 금고지정 신청 안내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함.
- 나. 제안서 등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다. 제안서 접수마감 후 추가 및 보완서류는 접수하지 아니함.
- 라. 이 외 세부사항은 「고양시 금고지정 신청 안내서」에 따름.

【별첨】

금고 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I. 총괄

항 목	세 부 항 목	배점	비고
계		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		30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10)	
	1) 국외 평가기관	(6)	
	2) 국내 평가기관	(4)	
	※ 지역조합인 경우, 국내평가기관만으로 전체 평가(10점)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20)		
1) 총자본비율 (안전성)	(7)		
※ 지역조합인 경우, 순자본비율로 평가			
2) 고정이하 여신비율 (건전성)	(7)		
3) 자기자본 이익률 (수익성)	(6)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협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에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자치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18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6)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5)		
다. 자치단체 대출금리	(4)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3)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21	
가. 관내지점의 수 및 지역주민이용 편리성	(5)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	(8)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8)		
4. 금고업무 관리능력		22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5)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7)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7)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3)		
5. 지역사회기여 및 시와 협력사업 추진능력		9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5)		
나.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 계획	(4)		

II.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 (30점)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10점)

- 평가기준 : 공인된 국내·외 신용평가기관 조사자료의 등급기준에 의거 금융기관별로 비교·평가하여 고양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배점
- 평가방법
 - 금융기관이 제출한 가장 최근의 평가를 기준으로 평가
 - 신용평가기관의 평가 등급에 따라,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20점)

- 금융기관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주요 경영지표 각 항목별 비율을 비교·평가하여 고양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배점하되,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 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확인
- 주요 경영지표 평가항목
 - (1) 총자본비율(안정성, 7점)
 - (2) 고정이하 여신비율(건전성, 7점)
 - (3) 자기자본 이익률(수익성, 6점)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18점)

가. 정기에금 예치금리 (6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에금의 기간별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비교·평가한 후 고양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배점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5점)

-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한 보통예금금리를 적용기준으로 평가한 후 고양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배점

다. 자치단체 대출금리 (4점)

- 자치단체가 제시하는 지방채 및 일시차입 규모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평가한 후, 고양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배점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3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를 비교·평가한 후 고양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배점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21점)

가. 관내지점의 수 및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5점)

- 지역주민이 금융거래와 지방세입금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전국 영업점망 및 관내 영업점 분포도 기준으로 비교·평가하되 고양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배점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8점)

- 최근 수년간 지방세입금 수납실적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고양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배점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8점)

-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추진실적 및 휴일 은행이용 편의성 제고방안,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세편의(전자납부 등) 증진방안, 파업 등 사고 등을 대비한 운영 계획 등을 비교·평가하여 고양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배점

4. 금고업무 관리능력 (22점)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5점)

- 세입·세출 전산화, 자금운용 전산화, 각종 보고서 전산화, 송금 전산화 등 금고인프라를 비교 평가하여 고양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배점
- 금고 관리인력 비교 평가하여 고양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배점
- 지방세입금 수납에 따른 자금관리 및 각 부서 자금집행 등에 따른 세입·세출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Cash-flow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개발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고양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배점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7점)

-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금고취급 경험 및 운영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고양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배점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 (7점)

- 금고관련 세입·세출의 자금관리, 지방세입금 수납개선 및 안정적인 전산시스템 운영을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계획(안)을 제출받아 비교·평가한 후 고양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배점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3점)

- OCR시스템 운영 현황 및 실적과 계획(안)을 제출받아 비교·평가한 후 고양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배점

5. 지역사회기여 및 시와 협력사업 추진능력 (9점)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5점)

-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구호활동 및 지역사회의 사회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으로 평가하되 고양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배점

나.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계획 (4점)

- 고양시에 협력사업비 출연금 지원계획 비교·평가한 후, 고양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배점

고양시 공고 제2017-1273호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소로3-473호선 일부개설] 실시계획인가 전 열람 공고

1. 우리시 일산서구 덕이동 406-3번지의 1필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 [도로:소로3-473호선 일부개설] 사업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따른 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되어, 같은법 제90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전 일반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3. 관계도서는 고양시청 도시정비과(☎ 031-8075-3144)에 비치하고 있으며,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동안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2017년 07월 21일

고 양 시 장

1.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내용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406-3번지의 1필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3-473호선 일부개설]사업

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위치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점	종점				
기정	소로	3	473	6	국지 도로	382	소로3-474	중로1-101	일반 도로		고양시 고시 2009.5.4	
금회 시행	소로	3	473	6	국지 도로	73	소로3-474	중로1-101	일반 도로			시행면적 = 446㎡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주소 :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로42번길 24(장항동, 신성하이네스트 908호)
- 성명 : 문재근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인가일로부터 ~ 2017. 12. 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 붙임 참조

사.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관계인 주소, 성명 : “바”항과 동일

아.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다, 바”항과 같음

자. 열람 및 의견 제출기간 : 시보게재일로부터 15일간

차.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 고양시청 도시정비과(☎031-8075-3144)

2. 관계도면 : “계재생략”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연번	위치			면적(㎡)		소유자	주소	비고
	행정동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합계				64,473	446			
1	덕이동	406-3	전	496	50	문재근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로42번길 24 (장항동, 신성하이네스트 908호)	
2	덕이동	571-33	임	63,977	396	국 (산림청)		

2025 고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 주민 공람 공고

1. 『주택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고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같은 법 제72조 제1항 및 시행령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주민 공람을 실시합니다.
2. 본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7년 7월 21일

고양시장

1. 공람명칭 : 2025 고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2. 공람기간 : 2017. 7. 21 ~ 2017. 8. 4. (공고일로부터 15일간)
3. 공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
 - 고양시청 신관 주택과 (031-8075-3119) 및 각 구청 건축과 담당부서 (첨부 1 참조)
 - 고양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4. 공람내용 : 2025 고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
 - 가. 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 나.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 및 관련 계획 검토

- 다. 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 현황 및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요 예측
- 라. 공동주택 유형별 관리방안
- 마. 세대수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의 영향 검토
- 바. 일시집중 방지 등을 위한 단계별 리모델링 시행방안
- 사. 공동주택 저에너지·장수명화 방안
- 아. 리모델링 지원방안
- 자. 그 밖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주요내용

가. 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 대상범위 : 고양시 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
- 목표연도 : 2025년
- 목표 및 방향
 - 공동주택 노후화를 대비한 관리방안 마련으로 주거환경개선과 삶의 질 향상
- 내용적 범위
 - 기본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 기초조사 및 리모델링 수요예측 / 기반시설 영향검토, 시행방안, 노후 공동주택의 장수명화 방안, 지원방안 등 부문별 계획

나. 상위 및 관련계획 검토

- 2020 경기도 주택종합계획
- 2030 고양시 도시기본계획
- 고양시 202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다. 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 현황 및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요 예측

- 고양시 기반시설 현황
- 고양시 공동주택 현황
- 고양시 권역별·생활권별 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 현황
- 수요판단기준에 따른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물량 예측

라. 세대수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의 영향 검토

○ 상수도

- 2025년 기준 고양시 상수공급 여유용량은 약 78,610명으로 리모델링 사업에 따른 증가인구를 고려했을 때 현재 상수시설 용량으로도 충분히 수용가능

○ 하수도

- 2025년 기준 고양시 하수공급 여유용량은 약 51,331명으로 리모델링 사업에 따른 증가인구를 고려했을 때 현재 하수시설 용량으로도 충분히 수용가능

○ 공원

- 현재 공원 현황으로도 기준 충족 및 영향 미미

○ 학교

- 리모델링 사업으로 인한 증가 학생의 수용 영향은 미미함

○ 교통

- 리모델링 사업에 따른 교통영향 및 교통 혼잡가중은 극히 제한적임

바. 일시집중 방지 등을 위한 단계별 리모델링 시행방안

○ 목적

-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사업이 추진되기 전 향후 주택난과 전세난이 야기되지 않도록 적절한 사업 착수량을 검토 및 조정

○ 방안

-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사업의 시행을 2단계로 나누어 시행하되, 단계별 사업착수 가능 물량을 초과시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사업계획 승인 또는 허가의 시기를 조정

아. 공동주택 저에너지·장수명화 방안

○ 고양시 에너지 저감 녹색건축 관련 정책 및 제도 검토

○ 고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장수명화 방안 제안

자. 리모델링 지원방안

○ 가. 공공지원 방안 :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및 기금설치
조례 통하여 지원 예정

※ 공공지원에 관한 세부내용은 관련부서 협의
및 타 시·군 지원 사례조사 후 수립 예정

차. 그 밖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게재 생략 (공람장소에
비치)

○ 공람장소 및 고양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열람 가능

6. 의견제출방법

공람 및 공고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고양시청 주택과
와 각 구청 담당부서에 서면으로 방문 제출 또는 우편(공람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에 한함)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장소 : 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고양시청 신관 5층
주택과 (우) 전화 : 031-8075-3119

2) 각 구청 건축과 담당부서 (첨부 1참조)

첨부1)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처(전화번호)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전화번호	비고
고양시 주택과	☎031-8075-3119	
덕양구 건축과 주택팀	☎031-8075-5374	
일산동구 건축과 주택팀	☎031-8075-6372	
일산서구 건축과 주택팀	☎031-8075-7372	

운행정지명령 자동차 공고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 운행정지 요청서를 제출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및 동 시행규칙 제22조(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 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요청 등) 규정에 의거하여 운행정지명령을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운행정지명령 자동차 공고
2. 공고기간 : 2017.07.21. ~ 2017.08.06.(16일간)
3. 공고대상 : “운행정지명령 자동차 현황” 참조
4. 공고내용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에 따라 운행정지명령 받은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 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및 제82조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의문 사항은 고양시차량등록사업소 특별사법경찰2팀 (☎031-8075-477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운행정지명령 자동차 현황 1부.

2017. 07.21.

고양시차량등록사업소장

운행정지명령 자동차 현황

연번	자동차등록번호	차명	차대번호	운행정지명령 사 유	운행정지명령일자	비 고
1	경기87다1212	봉고프런티어	KNCSD0322XS437850	소유자 신청	2017.06.15.	
2	87누4801	87누4801	KMFFA17APSU215703	소유자 신청	2017.06.15.	
3	25다6438	다이너스티	KMHXF31TPTU146378	소유자 신청	2017.06.16.	
4	15가0807	K5 하이브리드	KNAGW41CBGA002610	소유자 신청	2017.06.16.	
5	12부6214	링컨MKZ	3LNHM26T58R609645	소유자 신청	2017.06.16.	
6	경기87라3520	포터초강축슈퍼캡	KMFXXKS7BPYU4453072	소유자 신청	2017.06.22.	
7	11너9774	아반떼	KMHDU41BP7U222490	소유자 신청	2017.06.23.	
8	46노6635	투싼	KMHJT81VBBU248681	소유자 신청	2017.06.23.	
9	67누7643	레인지로버 이보크 2.2D	SALVA2BE1CH687950	소유자 신청	2017.06.20.	
10	22오8646	A5 Cabriolet 2.0 TFSI quattro	WAUZZZ8F6BN024171	소유자 신청	2017.06.27.	
11	05누7142	에쿠스	KMHGT41CPYU009696	소유자 신청	2017.06.23.	
12	12두2706	에쿠스	KMHGG41DBC047898	소유자 신청	2017.06.29.	
13	25러1742	토요타	JTNBF3EK9B3006203	소유자 신청	2017.06.29.	
14	24오4224	ROVER MINI	KL90B2M9GWSZ00001	소유자 신청	2017.06.30.	
15	46라1098	NEW EF쏘나타	KMHEN41BP4A089860	소유자 신청	2017.06.30.	

연번	자동차등록번호	차명	차대번호	운행정지명령 사유	운행정지명령일자	비고
16	69부9822	겔로퍼	KMXKPG1HPTU178633	소유자 신청	2017.06.30.	
17	14부4281	세피아II	KNAFB2223XA157470	소유자 신청	2017.07.04.	
18	36노6541	스포티지	KNAJE55537K423067	소유자 신청	2017.07.04.	
19	35가1914	BMW	WBAGN61012DP83615	소유자 신청	2017.07.03.	
20	01고8310	VOLVO	YV1LS48K6Y2673358	소유자 신청	2017.07.03.	
21	62소1549	카이엔	WP1AF2922FLA36068	소유자 신청	2017.07.06.	
22	43모6942	푸조	VF32DNFUB7Y000882	소유자 신청	2017.07.06.	
23	경기3서1313	쏘나타	KMHCF31FPSU337593	소유자 신청	2017.07.11.	
24	21주5432	EF쏘나타	KMHEN41BPXA170068	소유자 신청	2017.07.11.	
25	18로9244	그랜저XG	KMHFU41CPYA073139	소유자 신청	2017.07.12.	
26	48두7149	벤츠S550	WDDNG71X28A189395	소유자 신청	2017.07.18.	
27	46러2102	쏘나타	KMHCF31FPPU021589	소유자 신청	2017.07.19.	

